# 강간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대전고등법원 2015. 7. 9. (청주)2015노18]

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쌍방

【검 사】 김보현(기소), 김병철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

【원심판결】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1. 8. 선고 2014고합58 판결

### 【주문】

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##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2년 6월,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1) 사실오인

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.

2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판 단

가.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

- 1)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, 졸피템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(이하 '이 사건 수면제'라 한다)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- 2)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, 졸피 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- 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-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(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)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,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,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,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,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,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,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,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
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 [이유]

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2년 6월,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#### 1) 사실오인

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.

# 2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 2. 판 단

가.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

1)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,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(이하 '이 사건 수면제'라 한다)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

하였다.

2)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, 졸피 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
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(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)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,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,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,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,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,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,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,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
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 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【이유】

1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2년 6월,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1) 사실오인

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.

2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# 2. 판 단

가.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

1)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,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(이하 '이 사건 수면제'라 한다)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

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
2)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, 졸피템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
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(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)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,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,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,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,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,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,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,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
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2년 6월,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1) 사실오인

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.

2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. 판 단

가.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

- 1)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,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(이하 '이 사건 수면제'라 한다)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- 2)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, 졸피 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  - 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-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(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)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,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,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,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,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,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,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,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
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 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 【이유】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2년 6월,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1) 사실오인

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2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# 2. 판 단

가.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

- 1)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,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(이하 '이 사건 수면제'라 한다)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.
- 2)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, 졸피 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  - 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
-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(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)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,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,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,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,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,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,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,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,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,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
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 3. 결 론

그렇다면,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